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03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3.

발 의 자 : 임종득 · 서천호 · 송언석
이상휘 · 김용태 · 강명구
김태규 · 김예지 · 김성원
김위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.

그런데 재난의 예방 및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재난 신고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현저히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난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(안 제19조의2 신설).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9조의2(포상금) ①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난 신고로 인하여 재난으로부터 현저히 손실을 방지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, 지급대상,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9조의2(포상금) ① 행정안전부 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난 신고로 인하여 재난으로부터 현저히 손실을 방지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, 지급대상,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